재단법인 미타카국제교류협회 홈스테이 보조금 교부요강

1996년(헤이세이 8년) 11월 14일
요강 제3호

(목적)
제1조 재단법인 미타카국제교류협회(이하
"협회"라고 칭함)는 시민이 외국인 유학생 등의 홈스테이를 수락한 경우,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시민의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 국제화 의식의 양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조대상의 내용)
제2조 보조대상은 다음과 같다.
・재단법인 미타카국제교류협회가 시행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시민이 외국인 유학생 등을 홈스테이로 맞아들인 경우의 식비 등.
・그 밖의 이사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보조금의 한도액)
제3조 보조금액은 한 명당 1일 2천 엔으로 한다.
(보조금의 교부신청)
제4조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고 칭함)는 재단법인 미타카국제교류협회 홈스테이 보조금 교부신청서(양식 제1호)를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 이사장은 보조금의 교부신청이 있을 시, 해당신청과 관련된 서류 등의 내용을 심사하고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2 이사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했을 시에는 재단법인 미타카국제교류협회 홈스테이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양식 제2호)를 통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이사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과정에서 보조금 교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을 첨부할 수 있다.
(실적보고)
제6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보조대상사업의 완료 시 재단법인 미타카국제교류협회 홈스테이 보조금 실적보고서(양식 제3호)를 신속하게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7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될 경우, 이사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을 통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보조금을 해당 보조대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상기 3항목 이외의 보조금 교부조건 또는 본 요강을 위반했을 때
2 이사장이 상기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보조대상사업 등의 취소대상과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이미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부칙
본 요강은 1996년(헤이세이 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양식 제1호 (제 4조 관련)

년　　월　　일

재단법인 미타카국제교류협회
理事長　　귀하

신청자 주 소

이 름　　인

재단법인 미타카국제교류협회
홈스테이 보조금 교부신청서

재단법인 미타카국제교류협회 홈스테이 보조금 교부요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조성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내용

1 교부신청액　　엔

2 홈스테이 기간

3 체류자
- 이름
- 출신국
- 기타

양식 제2호 (제 5조 관련)

년　　월　　일

주　소

이　름　　귀하

__년__월__일자로 신청된 표기조성금에 관하여 재단법인 미타카국제교류협회 홈스테이 보조금 교부요강 제 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첨부하여 _____엔을 교부합니다.

조　건

1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보고한다.

2 사업종료시에는 신속하게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한다.

양식 제 3호(제 6조 관련)

__년__월__일

재단법인 미타카국제교류협회
이사장 귀하

주 소

이 름 인

재단법인 미타카국제교류협회 홈스테이 보조사업실적보고서

____년____월____일부 三国際第____ 号로 교부결정을 받았음 __년__도 재단법인 미타카국제교류협회 홈스테이 보조사업의 실적을 본 교부요강 제 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내용

1 교부결정을 받은 금액 _____엔

2 체류기간 등

3 체류자